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강릉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릉시 의회 의장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다. 위탁운영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4. 상담과 자원봉사·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안내
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에 배치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의 수탁자도 이에 따라 센터장 및 종사자를 채용·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